

법제분석지원 Issue Paper 12-25-⑦

신청기관 : 문화체육관광부(녹색관광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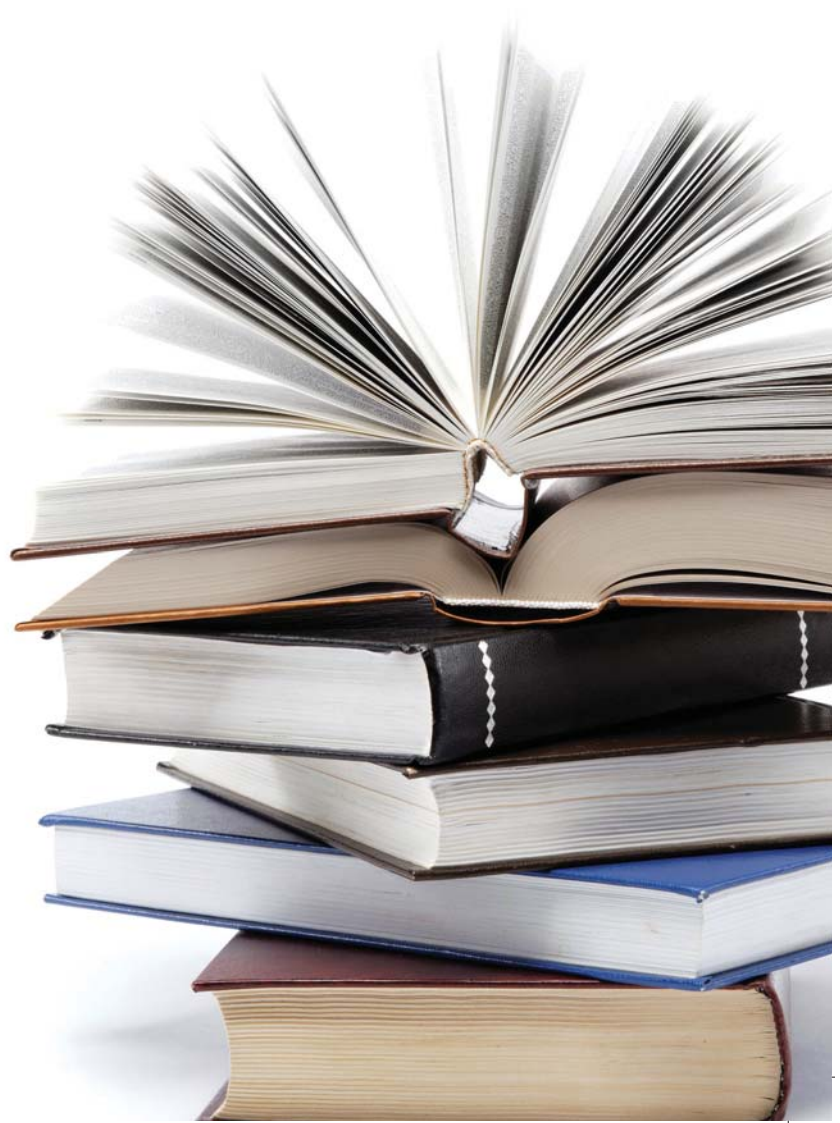


호주의 생태관광인증 관련 정책과 법제분석

이 유 봉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법제분석지원 Issue Paper 12-25-⑦

신청기관: 문화체육관광부(녹색관광과)

호주의 생태관광인증 관련 정책과 법제분석

연구자: 이 유 봉
(법제분석지원실 부연구위원)

2012. 10. 31

[법제분석 요약]

○ 검토할 주요 문제

1. 호주의 생태관광 관련 정책
2. 호주의 생태관광 관련 법제
3. 호주의 생태관광인증제도
4.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 관련 법령

법령	제정 일자
• 호주관광청법 (Tourism Australia Act)	2004
• 관광단체법 (Travel Agents Act)	1986
• 유산위원회법 (The Heritage Council Act)	2003
• 세계유산보전법(World Heritage Properties Conservation Act)	1983
• 환경보호와 생물다양성에 관한 법(Environment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	1999
• 대보초 해양공원법(Great Barrier Reef Marine Park Act)	1975

(2) 법령상의 주요 논점 및 개선방안

1) 호주의 생태관광 관련 정책

- 호주에서의 관광산업은 호주 국내총생산 중 5.25%를 차지하며,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도 상당함
- 특히, 호주의 풍부한 자연환경을 관광의 대상으로 하는 생태관광 산업은 경제의 발전과 환경보전을 양립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의 잠재력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됨

- 호주는 1991년 관광부(Department of Tourism)를 신설하고 관광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시작하였고, 1992년 「국가관광전략」과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가전략」의 발표를 통하여 「생태관광 국가전략」을 수립
- 이 국가전략을 통해, 생태관광의 4요소(자연환경, 생태적·문화적 지속가능성, 교육과 해설, 지역의 편익)를 제시하고, 12과제와 9 실행 프로그램을 제시하였으며, 그러한 실행 프로그램의 하나로 생태관광 인증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지원이 있었음
- 최근 호주정부는 관광산업과의 협조를 더욱 긴밀하게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광범위한 경제개혁의 아젠더의 하나로서 관광정책을 포함시키고 관광산업의 시장성을 강화하는 「장기적 국가관광전략」(2009년 12월), 「관광 2020」(2011년 12월)을 발표함
- 이러한 전략의 구체적 실행 지침으로서 2012년 1월, ‘관광·보호 지역포럼’에 의해 「보호·자연지역에서의 생태적 기회를 위한 모범경영지침」이 제시되었으며, 지속가능한 관광경험을 칭하는 말로 ‘생태적 기회(Eco-Opportunity)’라는 용어가 제시됨

2) 호주의 생태관광 관련 법제

- 생태관광은 풍부한 자연환경을 전제로 하므로 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유산의 지정 및 보호가 중요한 전제가 됨
- 따라서 호주의 생태관광 시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제는 크게 관광, 유산, 환경 관련 법제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관광법에는 「호주관광청법」과 「관광단체법」이 있으며, 「관광단체법」은 관광사업 시행요건 및 소비자보호 등에 대하여 규율하며, 「호주관광청법」은 지속가능한 관광진흥정책을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호주관광청에 대한 설립근거와 업무에 대하여 규율함

- 유산법에는 「유산위원회법」과 「세계유산보전법」이 있음
- 「유산위원회법」은 1974년에 국가적 유산등재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환경보전과 유산위원회(EPHC)’에 대하여 규정함
- 「세계유산보전법」은 1983년 세계유산목록 등재지역의 특별한 보전을 위하여 제정되었는데, 법원의 위헌결정 후 폐지되고, 「환경보호와 생물다양성에 관한 법」의 일부로 편입됨
- 환경법에는 「환경보호와 생물다양성에 관한 법」, 「대보초 해양공원법」 및 기타 국립해양공원 관련 법들이 있음
- 「환경보호와 생물다양성에 관한 법」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화·생물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1999년에 제정되었고, 2003년 개정으로 ‘환경’의 범위를 유산적 가치를 가진 장소에까지 확대하여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전의 틀을 제시함
- 「대보초 해양공원법」은 호주 연안의 세계적인 대보초 해양공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1975년에 제정되었으며, 해양공원운영에 있어 세계 유산적 가치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이용원칙을 고려하도록 함

3) 호주의 생태관광인증제도

- 호주는 1996년부터 세계에서 최초로 생태관광인증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오고 있고 현재 다수의 인증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는 비영리법인인 호주생태관광협회(EA)에서 운영되고 있는 ‘에코인증제’가 있음
- ‘에코인증제’는 ‘자연관광,’ ‘생태관광,’ ‘우수생태관광’의 세 가지 인증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프로그램은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지속가능성 기본원칙 하에 협회 내·외의 전문가들에 의해 신청 사업의 적정여부를 평가하고, 인증업체는 마케팅 등에 있어 혜택을 받게 됨

- 인증프로그램은 협회 자체기금으로 운영되며, 인증업무는 인증프로그램 관리위원회 등 5개의 조직에 의하여 나누어 운영됨
- 그 외에 ‘에코 가이드 프로그램,’과 ‘문화관광 인증제도’가 있으며 이들 인증프로그램도 호주생태관광협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최근에는 기후변화를 저감하기 위한 ‘기후 인증제’가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EA에 의해 설립된 호주지속가능관광협회에 의해 운영됨

4)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이 저성장국면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관광산업의 성장세는 두드러지며, 특히, 세계 생태관광산업은 1990년 이후로 해마다 20-34%정도의 고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이는 일반 관광사업 성장규모의 3배 이상 빠른 증가속도임
- 2008년 12월, 문화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한국형 생태관광 모델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
- 2012년 생태관광인증제를 도입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인증주체, 기준, 절차 등에 있어 추후에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므로, 인증기준이나 인증평가기관의 구성 등에 있어 호주의 인증제도운영방식이 참고될 수 있음
- 호주는 풍부한 자연자원을 배경으로 생태관광인증프로그램을 일찍이 도입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데, 특히 인증프로그램이 정부가 아닌 비영리법인인 호주생태관광협회에 의해 운영되면서도 독립성이나 평가의 객관성에 있어 신뢰를 얻고 있음
- 법제적인 관점에서는, 호주의 경우 생태관광정책이 환경보전정책과 적절하고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으며, 이는 유산의 지정 등을 통해 구체화됨으로써 환경과 관광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 최근에는 호주관광청에서 관광산업의 산업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실시되고 있으며 생태관광은 관광산업적 부문에서 경쟁력을 갖춘 관광상품으로 고려되어 생태관광의 운영사례가 관광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음

목 차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II. 호주의 생태관광 관련 정책 분석	3
1. 생태관광 국가 전략 수립	3
(1) 생태관광 정책 수립 배경	3
(2) 생태관광 정책 수립 과정	4
(3) ‘관광 2020’ 전략과 생태관광정책	4
2. 생태관광의 정의 및 구성요소	6
(1) 생태관광의 정의	6
(2) 생태관광의 구성요소	7
(3) 생태관광 비전, 목표 및 과제	8
(4) 계획의 추진 및 성과	10
III. 생태관광정책 및 행정담당 관련 기관	11
1. 호주 자원·에너지·관광부 (Department of Resources, Energy and Tourism)	11
2. 호주 관광청 (Tourism Australia)	13
3. 호주 생태관광협회 (Ecotourism Australia)	13
IV. 호주의 생태관광 관련 법제 분석	14
1. 관광법	14
(1) 호주관광청법 (Tourism Australia Act)	14
(2) 관광단체법 (Travel Agents Act)	15
2. 유산법	15

(1) 유산위원회법 (The Heritage Council Act)	15
(2) 세계유산보전법 (World Heritage Properties Conservation Act,)	17
3. 환경법	18
(1) 환경보호와 생물다양성에 관한 법 (Environment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	18
(2) 대보초 해양공원법(Great Barrier Reef Marine Park Act) ...	21
(3) 국립해양공원 관련 법	22
V. 호주의 생태관광 인증 프로그램	23
1. 에코 인증 프로그램 (Eco Certification Program)	23
(1) 취 지	23
(2) 개 요	23
(3) 인증 대상	24
(4) 인증 종류 및 로고	25
(5) 인증 원칙	26
(6) 인증 주체	26
(7) 인증 평가 과정	28
(8) 인증 제도의 혜택	28
(9) 인증 비용	30
(10) 인증 프로그램의 운영	30
(11) 인증 프로그램 관리	31
2. 에코 가이드 프로그램 (Eco Guide Program)	31
(1) 취 지	31
(2) 설립 배경	31
(3) 요구되는 자격	32

(4) 인증의 혜택	32
(5) 지원 절차	33
(6) 현장 평가 작업	34
(7) 검증 비용	34
3. 문화관광 인증 프로그램 (Respecting Our Culture Certification)	34
(1) 개요	34
(2) 취지	35
(3) 인증의 중요성	35
(4) 인증의 혜택	36
(5) 운영 방식	36
(6) 선정 기준	37
4. 기후 인증 프로그램 (Climate Action Certification)	38
(1) 개요	38
(2) 목표	39
(3) 인증 종류	39
(4) 운영 방식	40
(5) 비용	40
(6) 평가	41
5. 기타 관련 관광 인증	41
(1) TAAL 관광 인증	41
(2) TQUAL 관광 인증	43
VI. 결론	44
참고 문헌	47

표 목 차

[표 1] 생태관광 및 유사 개념의 정의	6
[표 2] 호주 「생태관광 국가전략」의 생태관광 구성요소	7
[표 3] 생태관광 국가전략	9
[표 4] 생태관광 국가전략 9가지 실행 프로그램	10
[표 5] 호주 관광행정관련 역대 담당 장관	12
[표 6] 호주의 「환경보호와 생물다양성에 관한 법」 하의 8대 국가 환경적 중요성(national environmental significance)	20
[표 7] 호주 생태관광 인증 프로그램의 종류별 내용 및 요건	25
[표 8] 자연 및 생태관광 인증 프로그램의 원칙 및 종류별 필요 요건	26
[표 9] 호주생태관광협회 내 인증제도 관련 조직	27
[표 10] 에코 인증 신청·유지 비용	30
[표 11] 에코 가이드에게 요구되는 자격요건	32
[표 12] 호주 문화관광 인증 기준	37
[표 13] 호주의 기후인증의 종류와 내용	39
[표 14] 호주의 기후 인증 취득·유지 비용	40

그림 목 차

[그림 1] 호주관광청 로고	13
[그림 2] 자연·생태관광 인증 절차	29
[그림 3] 호주 에코가이드 인증마크	34
[그림 4] 호주 문화관광 인증마크	38
[그림 5] TAAL 인증마크	43
[그림 6] TQUAL 인증마크	44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생태관광은 관광산업에 있어 ‘Win-Win-Win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환경, 경제, 지역사회 및 사회문화 체계 모두에게 있어 성공전략으로 제시됨¹⁾
- 이러한 전략을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이 생태관광인증제도이며, 이는 효과적으로 실행될 경우, 생태관광에 대한 청사진, 벤치마크(benchmark), 최선의 시행사례(best practice)를 개발 가능케 함²⁾
- 1990년 이후로, 세계 생태관광산업은 해마다 20-34%정도의 고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일반 관광사업 성장규모의 3배 이상 빠른 증가속도임³⁾
- 세계적으로 생태관광 및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UN에서는 2002년을 ‘생태관광의 해’로 지정한 바 있음
- 우리나라도 2003년부터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을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에서 분리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2003년 갯벌관광사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263개 사업에 1,441억 원을 지원⁴⁾

1) Alice Crabtree, Peter O'Reilly and Graeme Worboys, 「Regulation of Ecotourism: Institutional Responsibilities and Frameworks: Sharing expertise in ecotourism certification: developing International Ecotourism Standard」

2) Id.

3) 2004년 기준임. Fact Sheet: Global Ecotourism, The International Ecotourism Society, <<http://mekongtourism.org/website/wp-content/uploads/downloads/2011/02/Fact-Sheet-Global-Ecotourism-IETS.pdf>>, p.2.

4) 문화체육관광부(2012.8), 『2011년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pp.216-217.

- 2008년 12월에는 문화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한국형 생태관광 모델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⁵⁾
- 그러나 최근, 생태관광의 관심증가로 인해 현재 무분별하게 실시되고 있는 생태관광이 자연친화적 관광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게 실시됨으로서 오히려 생태계 훼손을 초래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⁶⁾
- 이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 종래 국내에서도 위와 같은 생태관광 인증제도를 도입하려는 논의가 있어 왔음
- 최근 2012년 7월, 심재철 외 9인의 국회의원 발의로 생태관광인증제도입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 이 법안은 생태관광 인증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에 관한 조항들을 두고 있음
- 따라서, 위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에 따른 생태관광인증제의 실행 방식에 대한 구체적 기준제시가 필요할 것이며, 이 보고서는 이에 대한 기초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 구체적으로, 이 보고서는 1996년부터 생태관광인증프로그램을 세계 최초로 실시한 국가로서 국제적 표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호주의 생태관광정책과 생태관광인증제도 및 관련 법령 등을 살펴보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함

5) 문화체육관광부(2012.8), 『2011년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p.219.

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대표발의), (2012.7.23)

II. 호주의 생태관광 관련 정책 분석

1. 생태관광 국가 전략 수립

(1) 생태관광 정책 수립 배경

- 호주의 관광 산업은 호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중요한 산업임
- 2010-2011년 기준, 관광산업이 호주 국내총생산(GDP)의 5.2% (\$73.3billion), 호주 총 고용시장의 7.9%(907,100명) 차지⁷⁾
- 그 중, 특히 생태관광산업은 지역경제 발전 환경보전 기금 조성, 외환 수익, 고용 창출 등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산업으로 평가됨⁸⁾
- 호주 정부는 관광이 21세기 중요 산업이 될 것이라고 예측, “관광-21세기의 티켓(Tourism - A Ticket to the 21st Century)”이라는 프로젝트 수행⁹⁾
- 호주 정부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관광과 환경은 자연스러운 파트너이며 관광의 중요한 매력물 중의 하나인 자연환경에 의존하고 환경 보전을 위한 경제적 당위성이 될 수 있다고 전망¹⁰⁾
- 그러므로 관광개발이 관광산업에 있어 환경관리가 필요한 환경의 보전과 양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 생태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에 중점을 두고자 함¹¹⁾

7) www.ret.gov.au/tourism/Documents/tra/TourismContribution.pdf

8) 이귀옥, 「생태관광정책에 관한 연구: 호주와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대구미래대학 논문집 제25집 (2007년) pp.351-372.

9) Id.

10) Id.

11) Id.

(2) 생태관광 정책 수립 과정¹²⁾

- 1991년 관광부(Department of Tourism)를 신설하고 관광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시작
- 1992년 「국가관광전략(National Tourism Strategy: NTS)」과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for Ecologically Sustainable Development)」을 발표
- 「국가관광전략(NTS)」은 “자연 및 유산의 보전을 위한 책임 있는 계획과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을 개발한다”는 환경적 목표를 제시, 이에 기초하여 「생태관광 국가전략(National Ecotourism Strategy: NES)」 수립
- 생태관광 국가전략의 수립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짐
- 첫째, 모든 주에서 생태관광 워크숍을 개최하고, 연방 및 지방정부, 관광업계, 시민단체, 지역주민 대표가 참여한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1993년 “생태관광 국가 전략 초안”을 발표
- 둘째, 공청회 및 관련부처와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초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1994년 생태관광 계획, 개발, 관리를 위한 국가정책의 기본 틀이 되는 “생태관광 국가전략”을 확정

(3) ‘관광 2020’전략과 생태관광정책

- 호주의 관광정책은 관광산업과의 협조를 보다 더 긴밀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감
- 2009년 12월 호주정부는 광범위한 경제개혁의 아젠더의 하나로서 관광정책을 포함시키고, 관광산업의 수요와 공급측면을 조화시키기

12) 김성진(2003.4.9), 『생태관광 진흥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위한 「장기적 국가관광전략(The National Long-Term Tourism Strategy)」을 발표함

- 2011년 12월 6일 「장기적 국가관광전략」의 내용을 개선하는 ‘관광 2020(Tourism 2020)’이 공표되었는데,¹³⁾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아시아로부터의 수요성장에 대응
 - 경쟁력있는 전자기술능력 배양
 - 투자유치와 규제개혁의 수행
 - 관광을 위한 교통환경의 개선
 - 노동, 기술, 원주민 참가의 증대
 - 산업의 탄력성, 상품성과 질의 재고
-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2020 관광산업의 잠재력(2020 Tourism Industry Potential)」은 2020년까지 투숙관광객들이 1박에 1,150 억 달러에서 1,400억 달러까지 지출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위와 같은 목표달성을 위하여, 2012년 1월, ‘관광·보호지역포럼’¹⁴⁾에 의해 「보호·자연지역에서의 생태적 기회를 위한 모범경영지침」¹⁵⁾이 ‘영연방 환경과 물 상임위원회’¹⁶⁾에 제시됨¹⁷⁾

13) Department of Resources, energy and tourism, www.ret.gov.au/tourism/Documents/tra/TourismContribution.pdf.

14) ‘관광·보호지역포럼(Tourism and Protected Areas Forum: TAPAF)’은 호주 전역의 각 주의 관광청들과 국립 공원 관리기관들이 모인 포럼임.

15) The Best Practice Guidelines for Eco-opportunities in Protected and Natural Areas.

16) ‘호주정부 환경과 물 상임위원회(the COAG Standing Council of Environment and Water)’는 호주정부위원회에 의해 2010년 장관급 위원회 시스템의 검토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영연방에 귀속되는 환경과 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장관급 위원회이며, ‘국가환경보호 위원회(the National Environment Protection Council: NEPC)’를 포함하고 있음. COAG Standing Council on Environment and Water, <http://www.scew.gov.au/about/index.html>.

17) “Tourism Ministers’ Meeting Communiqué,” (4 May 2012), <http://www.ret.gov.au/tourism/Documents/Tourism%20Policy/tmc/Tourism-Ministers-Meeting-Communique-4May2012.pdf>.

- 이는 생태관광의 발전을 진흥하고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하에, 호주 전역의 국립공원과 보호지역에서의 생태관광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자 하는 호주의 토지관리행정청들을 위한 지침임¹⁸⁾
- 또한 위 지침은 보호지역 안 또는 인근의 지속가능한 관광의 경험을 통칭하는 말로 ‘생태적 기회(Eco-Opportunity)’라는 용어를 사용함

2. 생태관광의 정의 및 구성요소¹⁹⁾

(1) 생태관광의 정의

- 일반적으로 ‘생태관광(ecotourism)’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용어로서 ‘지속가능한 관광’이나 ‘자연관광’ 등의 용어도 사용되고 있음(표 1 참조)

[표 1] 생태관광 및 유사 개념의 정의²⁰⁾

분 류	정 의
모험관광 (Adventure Tourism)	위험요소와 고난위의 육체적 활동이 수반되는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관광형태로서, 특별한 기술이 요구됨
생태관광 (Ecotourism)	환경보전과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에 기여하는 자연지역에서의 책임을 수용하는 관광형태
지질관광 (Geotourism)	장소의 지질적 특성, 그 환경, 유산, 심미, 문화, 그 안의 주민들의 복지를 지원하고 향상시키는 관광

18) “Guidelines for Investment in National Parks and Protected Areas” (January 29, 2012), TCR Tourism, <http://trctourism.com/news/guidelines-for-investment-in-national-parks-and-protected-areas>.

19) 이귀옥, 「생태관광정책에 관한 연구: 호주와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대구미래대학 논문집 제25집 (2007년) pp.351-372.

20) Fact Sheet: Global Ecotourism, The International Ecotourism Society, <<http://mekongtourism.org/website/wp-content/uploads/downloads/2011/02/Fact-Sheet-Global-Ecotourism-IE-TS.pdf>>, p.3.

분 류	정 의
대규모 관광 (Mass tourism)	특히 ‘바다, 모래, 태양’ 휴양지와 관련되거나 초 국가간 소유권을 행사하는 대규모 관광과 관광지역에 미미한 직접적 경제수익을 가져다주는 관광, 패키지 관광
자연중심 관광 (Nature-based tourism)	자연환경에 주로 기반하는 관광형태
저소득층지원관광 (Pro-poor tourism)	가난한 사람들에게 순수익을 증가하도록 하는 관광형태
책임관광 (Responsible Tourism)	지역사회에 대한 편익을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사회적·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들이 손상되기 쉬운 문화, 서식지, 서식 종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관광형태
지속가능관광 (Sustainable Tourism)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를 보호 또는 증가시키면서, 현재의 관광객들과 관광지역의 요구에 부합하는 관광형태

- “생태관광 국가전략”은 생태관광을 “자연환경의 교육과 해설을 포함하며,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게 관리되는 자연관광”으로 정의
- 여기서 자연환경이란 문화요소를 포함하며, 생태적 지속가능성이란 지역사회에 대한 적절한 혜택과 자원의 장기적 보전을 의미

(2) 생태관광의 구성요소

- 생태관광의 4가지 요소로 자연환경, 생태적·문화적 지속가능성, 교육과 해설, 지역의 편익을 제시

[표 2] 호주 「생태관광 국가전략」의 생태관광 구성요소

생태관광 구성요소	위 반
자연환경	생태관광은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함. 자연환경은 문화적 가치를 내포하고, 자연요소와 문화요소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포함. 또한 자연환경의 보전과 관리는 생태관광 개발, 계획, 관리의 필수적 사항.

생태관광 구성요소	위 반
생태적·문화적 지속가능성	생태관광은 생태적, 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 즉, 현재 및 미래세대를 위해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하지 않고 지역사회와 자연환경에 편익을 제공하는 관광이 되어야 함.
교육과 해설	생태관광은 자연환경 및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과 해설을 제공하는 관광. 생태관광객은 자연환경을 감상하고 이해하기 위해 관광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임. 따라서 생태관광사업자는 여행 전과 여행 중에 적정 자격을 갖춘 가이드를 고용하여 정보 및 자연환경에 대한 해설을 제공해야 함.
지역에의 편익	생태관광은 수용지역 사회에 편익을 제공하는 관광. 지역의 경제적 편익은 지역주민의 고용, 지역 생산품과 서비스의 이용, 지역 시설의 활용 등을 통해 발생. 생태관광은 지역 자원에 대한 자긍심 증진 등 사회문화적 편익도 창출해야 함.

(3) 생태관광 비전, 목표 및 과제²¹⁾

- “생태관광국가 전략”은 “호주는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뛰어나고 국내적으로 활력을 지닌, 생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산업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호주의 생태관광은 지역사회의 경제적 혜택과 자원의 보전을 실현하는 동시에 환경의 질과 문화의 온전성을 유지하는 국제적인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라는 비전 설정
- 비전 실현을 위한 세 가지 목표는 첫째, 생태관광의 계획, 개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과제의 파악, 둘째, 생태관광업계, 자연자원 관리자, 계획가, 개발사업자, 연방 및 지방 정부에게 지침이 되는 국가정책의 기본틀 제시, 셋째,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 수립

21) Id.

- “생태관광국가전략”은 생태관광 계획, 개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12가지 과제를 파악하고, 각 과제별 목표와 실천사항을 제시²²⁾

[표 3] 생태관광 국가전략

과 제	목 표
1. 생태적 지속가능성	전관광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원칙을 적용하고 실천하도록 장려하고 촉진
2. 통합 지역계획	생태관광을 통합한 통합 지역계획 수립을 촉진
3. 자연자원 관리	생태관광활동과 자연보전이 상호 보완, 조화할 수 있는 관리방안장려
4. 규 제	산업표준과 인증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업계의 자율 규제를 장려
5. 생태관광 시설	자연환경에 대한 이용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태 관광시설의 입지 선정, 친환경적 설계 및 시공, 이용을 지원
6. 영향 모니터링	계획과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생태관광의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
7. 마케팅	관광객의 기대를 충족하고 수요와 공급을 조화시키기 위해 생태관광상품의 지속가능한 공급을 장려하고 촉진
8. 산업표준 및 인증	고품질의 산업표준과 국가 생태관광 인증 시스템을 개발
9. 생태관광 교육	모든 이해당사자에 대한 생태관광 교육의 수준과 방안을 개선
10. 원주민 참여	원주민과 토르 해협 섬주민의 생태관광에 대한 자주적 결정, 자율관리, 경제적 기회를 증진
11. 생태관광산업 육성	생태관광 사업체의 요구를 조사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
12. 형평성	생태관광 경험 기회를 공평하게 하고, 생태관광 활동이 수용 지역사회와 자연환경 관리 및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촉진

22) 김성진(2003.4.9), 『생태관광 진흥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4) 계획의 추진 및 성과²³⁾

- 생태관광국가전략은 연방 정부가 실천해야 할 9가지 실행 프로그램을 제시
- 호주정부는 생태관광 인증프로그램 개발 등 이 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해 1993년부터 4년간 1천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함

[표 4] 생태관광 국가전략 9가지 실행 프로그램

실행 프로그램	추진 및 성과
1. 생태관광산업 인증 프로그램 개발	업계 주도의 생태관광 인증제도 개발 위해 예산지원
2. 시장 조사 및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관광청과 관광연구원, 주정부의 관련 부서 및 기타 기관에서 이미 수행한 관광시장 조사 결과 통합 • 생태관광객의 동기와 만족도, 생태관광수요 등에 관한 시장 연구사업 지원 • 연구결과를 출판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함
3. 에너지와 폐기물의 최소화	생태관광자원 개발시 에너지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고 그 정보를 널리 보급
4. 생태관광시설 개발의 지원	생태관광 시설 개발 및 복원 사업, 자원보호를 위한 시설물 설치사업, 혁신적이고 친환경적인 설계 및 기술의 적용사업에 대해 예산 지원
5. 생태관광 교육	언론과 관광업계, 교육단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생태관광의 원칙과 실천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홍보사업 추진
6. 기초 연구 및 모니터링	생태관광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변화들을 관리하기 위한 기초연구와 예측모델링, 모니터링 사업 추진
7. 통합지역계획 수립 지원	지역 차원의 통합 생태관광 계획을 수립하는 시범사업과 사례연구에 대한 예산 지원

23) Id.

실행 프로그램	추진 및 성과
8. 생태관광 산업 육성	생태관광업체 대상으로 사업 경영 및 생태관광 관리 문제에 관련한 워크숍과 단기 교육과정을 실시
9. 학회 및 워크숍 개최	국내 및 국제 생태관광 학회와 지역별 워크숍을 개최하고 생태관광 홍보물 제작 지원

Ⅲ. 생태관광정책 및 행정담당 관련 기관

1. 호주 자원·에너지·관광부(Department of Resources, Energy and Tourism)

- 1991년 호주정부는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광부(Department of Tourism)」를 신설함
- 1996년, 관광부가 「산업·과학·관광부(Department of Industry, Science and Tourism)」로 통합된 후, 1997년, 다시 「산업·과학·자원부(Department of Industry, Science and Resources)」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그 아래 ‘체육·관광국(Sport and Tourism Division)’이 관광정책을 담당함
- 2002년 「산업·관광·자원부(Department of Industry, Tourism & Resources)」로 조직 개편됨
- 2007년 부터는 「자원·에너지·관광부(Department of Resources, energy and tourism)」에서 관광정책 및 행정을 관할²⁴⁾

24) Administrative Arrangements Order (3 December, 2007), Department of Resources, energy and tourism, <http://www.ret.gov.au>.

[표 5] 호주 관광행정관련 역대 담당 장관²⁵⁾

집권 정당	기 간	담당 장관	행정청 명칭
자유당	1966-1968	Don Chipp	관광업무 담당장관 (Minister in charge of Tourist Activities)
	1968 - 1971	Reg Wright	
	1971 - 72	Peter Howson	
호주 노동당	1972 - 75	Frank Stewart	관광·레크레이션 장관 (Minister for Tourism and Recreation)
자유당	1975	Reg Withers	
호주 노동당	1983 - 87	John Brown	스포츠·레크레이션·관광 장관(Minister for Sport, Recreation and Tourism)
	1987 - 88	John Brown	예술·스포츠·환경·관광· 국토 장관 (Minister for Arts, Sport, the Environment, Tourism and Territories)
	1988 - 90	Graham Richardson	
	1990 - 91	Ros Kelly	
	1991 - 93	Alan Griffiths	관광 장관
	1993 - 96	Michael Lee	(Minister for Tourism)
자유당	1996 - 98	John Moore	산업·과학·관광 장관 (Minister for Industry, Science and Tourism)
	1997 - 98	Andrew Thomson	스포츠·관광 장관 (Minister for Sport and Tourism)
	1998 - 2001	Jackie Kelly	
	2001 - 04	Joe Hockey	소기업·관광 장관
	2004 - 07	Fran Bailey	(Minister for Small Business and Tourism)
호주 노동당	2007 - 현재	Martin Ferguson	관광 장관 (Minister for Tourism) ²⁶⁾

25) [http://en.wikipedia.org/wiki/Minister_for_Tourism_\(Australia\)](http://en.wikipedia.org/wiki/Minister_for_Tourism_(Australia)).

2. 호주 관광청(Tourism Australia)

- 「호주 관광청(Tourism Australia)」²⁷⁾은 2004년 「호주관광청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영연방청과 기업법 (Commonwealth Authorities and Companies Act 1997: CAC Act)」의 적용을 받음
- 「호주 관광청」은 휴양 또는 사업을 목적으로 호주를 방문하는 국제 관광객유치의 활성화와 국내관광의 진흥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임
- 이 기관은 홍보, 대중매체 프로그램, 사업 박람회, 산업 프로그램, 소비자 지원, 온라인 의사소통, 소비자 연구 등을 수행

[그림 1] 호주관광청 로고



3. 호주 생태관광협회(Ecotourism Australia)

- 1991년 호주의 생태관광으로 대표하는 비영리 법인단체로서 설립됨
- 호주생태관광협회는 그 명칭이 「호주 생태관광협회(Ecotourism Association of Australia Ecotourism: EAA)」에서 2000년 「Ecotourism Australia: EA」²⁸⁾로 변경됨²⁹⁾

26) 현재 Martin Ferguson장관은 관광장관(Minister for Tourism)임과 동시에, 자원·에너지장관(Minister for Resources and Energy)임.

27) Tourism Australia, <http://www.tourism.australia.com/en-au/>.

- 생태관광업체 및 관광계획가, 보호지역 관리자, 학자, 관광 및 환경보전 컨설턴트, 지역의 관광협회, 일반 관광객 등이 회원으로 가입
- 협회의 역할은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산업 기준 개발 및 적용, 생태관광산업의 전문성 강화, 해설수준 개선,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실천 업체의 경제적 여건 개선, 보전 및 지역 편익 기여도 증대, 관광업계에 대한 지속가능한 원칙 홍보 및 인식 개선 등³⁰⁾
- 협회의 수행활동은 웹사이트를 통한 협회회원 홍보, 전자 뉴스레터 발간, 생태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로비,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운영 촉진, 마케팅, 생태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지원, 인증프로그램 및 에코가이드 프로그램에 대한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호주 생태관광 관련 책자(대표적으로는, ‘호주 생태관광가이드’) 등 출판, 생태관광 관련 회의 개최를 통한 정보공유 등³¹⁾
- 아시아 태평양 그린 글로브(Green Globe)와의 협력으로 ‘자연 및 생태관광 인증 프로그램(NEPA)’의 국제표준화³²⁾

IV. 호주의 생태관광 관련 법제 분석

1. 관광법

(1) 호주 관광청 법 (Tourism Australia Act, 2004)

- ‘호주관광청(Tourism Australia)’의 설립의 근거마련
- 호주관광청의 설립목적은 다음과 같음³³⁾

28) Ecotourism Association of Australia Ecotourism, <http://www.ecotourism.org.au/>.

29) 강미희(2010.2), 『생태관광 인증제도 추진방안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보고서, p.80.

30) 김성진(2003.4.9), 『생태관광 진흥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p.56.

31) Id.

32) Id.

33) Tourism Australia Act, 2004, Section 6(Objects).

- 호주 여행자에 대하여 영향을 줌
 - 호주에서의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진흥을 지원
 - 관광으로부터의 호주에로의 경제적 수익 증가를 도모
- 호주관광청은 관광에 관한 연구 및 분석, 최근 경향에 대한 보고, 산업과 정부와의 소통, 호주에 있어서의 관광의 국가적 기여에 관한 국민적 인식제고와 같은 역할을 담당

(2) 관광단체법 (Travel Agents Act, 1986)

- 이 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규율함
 - 관광업자로서 영업을 하기위해 필요한 허가에 대하여 규율
 - 여행보상기금(Travel Compensation Fund)에 대하여 규율
 - 부정행위 또는 영업행위에 대하여 규율
 - 광고와 고용관계에 대한 감독
 - 경영활동과 회계에 대한 지침제시
- 관광단체의 여행보상기금(Travel Compensation Fund)에 대한 의무
 - 관광단체는 허가의 조건으로서 기금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
 - 관광단체는 매년 일정한 비용을 기금에 납입해야 함
 - 관광단체는 재무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관광단체는 연간 재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관광보상기금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제공하며, 소송 및 회복에 대한 정책을 제시함

2. 유산법

(1) 유산위원회법 (The Heritage Council Act, 2003)

- 1974년에 처음으로 국가적 유산의 등재와 평가제도를 구축

- 2003년 개정에 의해 ‘환경’의 정의를 장소의 유산적 가치(heritage values of places)를 포함하는 것으로 넓힌 「환경보호와 생물다양성에 관한 법」의 내용을 반영함³⁴⁾
- 「환경보호와 생물다양성에 관한 법」상 유산적 가치를 가지는 ‘장소(places)’는 심미적, 역사적, 과학적 또는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자연적 그리고 문화적 환경으로 정의됨³⁵⁾
- 2001년, 종래의 ‘호주와 뉴질랜드 환경보전 위원회’³⁶⁾를 대체하는 ‘환경보전과 유산 위원회’가 설립됨.
- ‘환경보전과 유산 위원회(Environment Protection and Heritage Council: EPHC)’는 사회·경제적 목표에 부합하는 건강한 자연과 문화환경을 달성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됨
- 환경보전과 유산 위원회의 역할
 - 「환경보호와 생물다양성에 관한 법」상 국가유산 및 영연방유산 관리상³⁷⁾ 행하는 평가
 - 국가유산목록이나 영연방유산목록에 등재 또는 등재후보지의 보전 및 보호에 대하여 (지속가능성, 환경, 물, 사람과 공동체에 관한 부³⁸⁾) 장관에 의견제시

34) Lennon, JL (2006), “Natural and Culture Heritage,” theme commentary prepared for the 2006 Australian State of the Environment Committee,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and Heritage, Canberra, p.2, <<http://www.deh.gov.au/soe/2006/commentaries/heritage/index.html>>

35) 「Environment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 1999」, (Act No. 91 of 1999 as amended, 15 September 2011), Division 2(General list of definitions), section 528, (47).

36) Australian and New Zealand Environment Conservation Council: ANZECC.

37) 「Environment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 1999」, Part 15, Divisions 1A, 3A.

38) Department of Substantiality, Environment, Water, Population and Communities.

- 국가유산목록이나 영연방유산목록에의 등재를 위한 후보지 선정 및 등재유지 및 삭제에 관한 의견을 위 장관에게 제시
 - 호주의 역사적으로 중요한 해외 유적지목록에의 포함 및 삭제에 있어 위 장관에게 의견제시³⁹⁾
 - 국가유산과 관련된 진흥, 연구, 훈련, 교육 활동; 국가정책; 보조금 및 재정지원; 국가유산목록이나 영연방유산목록에 포함된 장소의 상태조사; 역사적 난파지역에 대한 영연방의 책임 등에 대하여 위 장관에게 의견제시
 - 유산의 등재, 평가, 보전, 조사의 활성화
 - 위원회의 역할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에 대한 조직 및 참여
 - 위원회의 자발 또는 장관의 요청에 의해 자문
 - 법 Part 5A에 따른 보고서 작성
 - 「환경보호와 생물다양성에 관한 법(Environment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 1999)」에 의해 위원회에 부여된 기능의 수행
- 그러나 2011년 EPHC의 소관업무는 앞에서 언급한 ‘영연방 환경과 물 상임위원회’로 이관되었음⁴⁰⁾

(2) 세계유산보전법(World Heritage Properties Conservation Act, 1983)

- 「세계유산보전법(World Heritage Properties Conservation Act, 1983)」은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지역의 특별한 보전을 위하여 호주 의회에서 1983년에 제정됨

39) Section 390P, the Environment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 1999.

40) COAG Standing Council on Environment and Water, <http://www.scew.gov.au/archive/index.html>.

- 이 법은 타마니안 댐 사건(Tasmanian Dams case)⁴¹⁾의 호주고등법원에서 문제시되었는데, 법원은 이 법의 몇몇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1999년 「환경보호와 생물다양성에 관한 법(Environment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의 일부로 그 내용이 편입되면서 폐지됨

3. 환경법

- 생태관광의 성공은 잘 보존된 풍부한 환경을 전제로 하므로 환경법은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지나친 이용과 훼손을 방지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함

(1) 환경보호와 생물다양성에 관한 법(Environment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 1999)

- 이 법은 국가적, 세계적으로 주요한 문화 및 생물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틀을 제공하고 이에 관한 다수의 법조항을 두고 있음
- 자연자원의 과도한 사용을 막고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실행 수단을 두고 있음
- 생물종다양성과 유산에 대한 보전을 위하여 철새, 고래, 해양생물 종 등 멸종위기종과 생태계의 복구를 증진하기 위한 조항을 둬⁴²⁾

41) Commonwealth v Tasmania (July 1, 1983) 158 CLR 1. 이 사건은 호주 Tasmania에서 Tasmania정부의 지원으로 추진되던 Gordon강에의 수력발전댐의 건설을 두고 연방정부가 댐건설을 중단케 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 사건에서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한관계에 있어 「세계유산보전법」의 위헌성 여부가 문제되었으며, 결국 법원은 연방정부의 댐건설중단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했으나, 이 법의 다른 일부 조항들은 위헌으로 결정됨.

42) 「Environment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 1999」, (Act No. 91 of 1999 as amended, 15 September 2011), Chapter5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and heritage), Part12 (Identifying and monitoring biodiversity and making bioregional plans), Part13 (Species and communities).

- 의도적으로 자연을 훼손하려는 자에게 민·형사상의 제재를 가함
- 이 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⁴³⁾
 - 환경, 그 중에서도 특히 국가적으로 환경적으로 중요성을 가지는 사안(national environmental significance)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
 - 자연자원에 대한 보전과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것
 - 생물적 다양성의 보전을 추진하는 것
 - 정부, 지역사회, 토지소유자, 원주민들을 포함하여 환경의 보호와 관리에 있어 협력적인 접근을 추진하는 것
 - 호주가 국제적 환경보호책임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것
 - 호주의 생물적 다양성에 대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있어서의 원주민들의 역할을 인식하는 것
 - 지식소유자들의 참여와 협력과 더불어 생물적 다양성에 대한 원주민들의 지식에 대한 이용을 추진하는 것
-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실행수단을 제공함
 -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적시에 시행되는 환경평가와 허가절차를 채택할 것
 - 고유종 및 철새, 고래, 생태계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어 생물적 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호주의 역량을 증진할 것
 - 세계유산의 보호, 보전 및 유지와 국제적으로 중요성을 가지는 람사르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위한 법규정을 들 것

43) Chapter 1(Preliminary), Part 1(Preliminary), 3. Objects of Act.

- 세계유산목록과 영연방유산목록에 등재를 위한 지역의 지정과, 이 지역들의 보호, 보전 및 설명(presentation)을 증진하기 위한 규정을 들 것
- 이 법상 ‘환경(environment)’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음⁴⁴⁾
 - 생태계와 사람과 공동체를 포함하는 그 구성부분
 - 자연적, 물질적 자원
 - 위치, 장소, 지역의 질과 성격
 - 장소의 유산적 가치
 - 위에서 열거한 것의 사회·경제·문화적 측면

[표 6] 호주의 「환경보호와 생물다양성에 관한 법」 하의 8대 국가 환경적 중요성(national environmental significance)⁴⁶⁾

8대 주요 국가 환경적 중요성	
1	세계적 보호유산
2	국가적 보호유산
3	람사르 협약상의 보호습지
4	국가적 멸종위기종 및 생태계
5	철새종
6	영연방 해안지역
7	대보초(大堡礁) 해양공원(Great Barrier Reef Marine Park) ⁴⁵⁾
8	원자력 활동

44) 「Environment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 1999」, (Act No. 91 of 1999 as amended, 15 September 2011), Division 2(General list of definitions), section 528(Definition).

45) 오스트레일리아 북동부의 Queensland 해안의 거대 산호초 군락.

46) 「Environment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 1999」, (Act No. 91 of 1999 as amended, 1 24 September 2012), Chapter 2(Protecting the environment), Division 1(Requirements relating to matters of national environmental significance), Subdivision A(World Heritage), Subdivision AA(National Heritage), Subdivision B(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Subdivision C(Listed threatened species and communities), Subdivision D(Listed migratory species), Subdivision E(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from nuclear actions), Subdivision F(Marine environment), Subdivision FA(Great Barrier

(2) 대보초 해양공원법(Great Barrier Reef Marine Park Act, 1975)

- 「대보초 해양공원법(Great Barrier Reef Marine Park Act, 1975)」은 세계에서 가장 생물다양성이 높으며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으로 알려진, 호주 해안의 대보초 해양공원(Great Barrier Reef Marine Park)을 보호하기 위한 법임
- 이 법에 의해 영연방기관으로서 대보초해양공원의 관리책임을 맡은 대보초해양공원청(the Great Barrier Reef Marine Park Authority: GBRMPA)이 설립됨
- 암초를 훼손하는 무분별한 관광을 막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인간의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강력한 규정을 둬
- 암포군락을 훼손하지 않도록 관광객이 따라야 할 지침과 더불어 방문허용지역과 연간 방문횟수에 대한 지침을 제시함
- 지구지정계획, 관리계획 등을 포함한 해양공원에 관한 계획 및 관리를 위한 규제의 틀을 제공함
- 동 법과 EPBC법 하에서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감사를 위한 조사권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감사제도에 관한 규정을 둬
- 형사처벌 집행, 민사배상, 행정행위, 위반사실의 고지, 긴급권한, 등의 실행 수단을 부여함
- 「대보초해양공원계획 2003(Great Barrier Reef Marine Park Zoning Plan 2003)」은 해양공원의 보전과 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수단을 제시하고 있음

Reef Marine Park),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Substantiality, Environment, Water, Population and Communities, (<http://www.environment.gov.au/epbc/index.html>).

- 「Great Barrier Reef Marine Park Act 1975」의 subsection 32(1)에 제시된 목적에 따라, 지구지정계획이 해양공원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 이용의 원칙을 고려하도록 함
- 이러한 지구설정계획은 대보초지역의 생물적 다양성의 보전과 현재·미래 세대가 압초의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이용과 대보초지역에의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함

(3) 국립해양공원 관련 법

1) 환경보전법(해양폐기물투기법)(Environment Protection (Sea Dumping) Act, 1981)

- 이 법은 별도의 허가가 없는 한, 선박, 항공기나 선착장 등으로 부터의 폐기물 등 모든 물건의 투기를 금함

2) 역사적 조난사고에 관한 법(Historic Shipwrecks Act, 1976)

- 이 법은 역사적인 조난사고와 유물과 관련된 특정 행위를 금하며 탐사가 공지되도록 의무화함

3) 원주민 소유지에 관한 법(Native Title Act, 1993)

- 이 법은 원주민소유지의 확인과 보호 그리고 원주민소유지에 대한 청구를 판단하기 위한 메커니즘 등의 원주민 소유지에 대한 주요한 내용에 관하여 규정함

4) 해양보전법(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법, Protection of the Sea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Act, 1983)

- 이 법은 호주해상안전청과 더불어 사회간접자본, 교통, 지역개발에 관한 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하여 규정함

5) 해양 설비에 관한 법(Sea Installations Act, 1987)

- 이 법은 해양시설이 환경보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포함하여 해양시설에 관한 다양한 요건을 규정함

V. 호주의 생태관광 인증프로그램

1. 에코 인증프로그램(Eco Certification Program)

(1) 취 지⁴⁷⁾

- 진정한 생태관광 운영자를 분별하기 위해 개발됨
-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질높은 생태관광 체험을 제공한다는 점을 보장하고자 함

(2) 개 요⁴⁸⁾

- 1992년 호주생태관광협회 이사회에서 생태관광 인증 프로그램 도입을 처음 논의
- 1994년 생태관광 국가전략(NES)에서 인증 프로그램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실천사업으로 제시
- 1995년 연방정부에서 생태관광 인증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재정 지원

47) Kym Cheatham, "Travel Shouldn't Cost the Earth -- 21 years of Ecotourism in Australia."

48) 이귀옥, 「생태관광정책에 관한 연구: 호주와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대구미래대학 논문집 제25집 (2007년) pp.351-372.

- 1996년 호주생태관광협회(Ecotourism Association of Australia: EAA)와 호주관광사업자네트워크(Australian Tourism Operator Network: ATON)가 공동노력으로 “국가 생태관광 인증 프로그램 (The National Ecotourism Accreditation Program: NEAP)”을 세계 최초로 완성
- 1997년 첫 번째 생태관광상품 인증
- 1999년까지 운영되다가, 2000년부터 프로그램 인증기준을 수정·보완하고 자연관광상품에 대한 인증을 포함하여 “자연·생태관광 인증 프로그램(Nature and Ecotourism Accreditation Program, NEAP II)”으로 운영
- 2003년 다시 수정·보완됨 (NEAP III)
- 자연·생태관광인증제도(NEAP: Nature and Ecotourism Accreditation Program)에서 에코인증프로그램(Eco Certification Program)으로 변경

(3) 인증 대상⁴⁹⁾

- 프로그램 인증 대상은 관광사업체가 아닌 관광상품이며, 관광상품에는 숙박시설, 관광프로그램, 관광매력물이 있음
- 숙박시설: 자연 지역의 숙박 관광객들을 수용하기 위한 기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예: 롯지, 리조트, 야영/ 캐러반 장소 등)
- 관광 프로그램: 1인 이상의 가이드가 개인이나 단체를 인솔하여 한 장소 또는 여러 장소를 안내하는 여행 상품 (예: 관목걷기, 드라이빙, 동굴탐험, 스노컬링 등)


49) Id.

- 관광 매력물: 관광객의 체험과 학습을 돕기 위해 자연지역과 기반시설이 결합된 시설 (예: 야생 공원이나 보호지역, 방문자 센터, 수족관 등)

(4) 인증 종류 및 로고⁵⁰⁾

- 에코 인증프로그램은 1996년 시작 당시에는 생태관광상품만 인증대상으로 하였으나, 국립공원과 같은 자연지역에서 관광사업을 실시하는 업체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업체들의 관광상품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연관광 인증도 포함함
- 현재 자연관광, 생태관광, 우수생태관광 세 가지 형태로 운영됨

[표 7] 호주 생태관광 인증 프로그램의 종류별 내용 및 요건

인증종류	로 고	내 용	요 건
자연 관광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자연지역에서 운영되는 관광	자연관광 관련 필수기준을 100% 충족하는 관광상품
생태관광		대상 환경에 대한 흥미로운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환경 보존과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자연지역에서 운영되는 관광	생태관광 관련 필수기준을 100% 충족하는 관광상품
우수 생태관광		호주 내에서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관광	생태관광 관련 필수기준을 100% 충족하고 보너스기준을 80% 이상 충족하는 관광상품

50) www.ecotourism.org.au/eco_certification.asp

(5) 인증 원칙⁵¹⁾

- 호주의 에코 인증프로그램의 기본원칙은 경제적 지속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이며, 각각의 인증프로그램에서 요구되어지는 요건은 다음과 같음

[표 8] 자연 및 생태관광 인증 프로그램의 원칙 및 종류별 필요 요건

기본원칙	상품 원칙	자연관광	생태관광	우수생태관광
경제적 지속가능성	1. 사업관리와 운영계획	v	v	v
	2. 사업윤리	v	v	v
	3. 책임있는 마케팅	v	v	v
	4. 고객 만족	v	v	v
환경적 지속가능성	5. 자연지역 중시	v	v	v
	6. 환경적 지속가능성	v	v	v
	7. 해설과 교육	N/A	v	v
	8. 보전에의 기여	N/A	v	v
사회적 지속가능성	9. 지역사회에의 기여	N/A	v	v
	10. 문화적 존경과 감성	N/A	v	v

(6) 인증 주체

- 에코 인증프로그램은 당초 호주생태관광협회(Ecotourism Association of Australia: EAA)와 호주관광사업자네트워크(Australian Tourism Operator Network: ATON) 공동으로 개발하였으나, 현재는 호주생태관광협회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음

51) 이귀옥, 「생태관광정책에 관한 연구: 호주와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대구미래대학 논문집 제25집 (2007년) pp.351-372.

- 호주생태관광(Ecotourism Australia: EA)는 1991년 설립된 비영리 법인단체로서 관광업체, 숙박업체, 투어와 관광 매력물 사업자들, 관광 기획자들, 보호지역 관리자, 학자, 관광 및 환경 해설과 훈련 컨설턴트, 지역 관광협회, 일반여행자 등으로 회원 구성
- 호주생태관광협회의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된 조직구성은 다음 표의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지며, 그 중 인증제도 평가부서는 상설 조직은 아니나, 독립적으로 평가업무를 담당함

[표 9] 호주생태관광협회 내 인증제도 관련 조직

조직명	역 할
인증프로그램 관리위원회 (EcoCertification Program Management Committ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생태관광협회(EA)의 하부위원회 • EA이사회와 의장에 의해 설립됨 • 인증프로그램 전반의 관리담당
인증제도 평가 (EcoCertification Program Assess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받고 자격을 갖춘 평가자에 의해 수행 • 인증프로그램 관리위원회가 평가자를 위한 훈련과정 제공 • 신청에 대한 심사는 훈련받은 평가자에 의해 진행되고 인증에 관한 권고사항이 EA대표에게 전달됨 • 상설조직이 아님
국가독립감사 프로그램패널 (The National Independent Audit Program Pan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지역 관리기관, 주정부 관광기관, 호주생태관광협회 등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며, 각 기관에서 2명의 전문가 패널을 선출 • 의장은 2년마다 패널구성원 가운데서 선출 • 감사활동의 총 감독 • 최종적 결정에 앞서 인증신청서를 검토
인증이의심판위원회 (The EcoCertification Program Appeals Tribu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명의 저명인사들로 구성 • 인증제도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신청자의 이의 제기시 이를 심사
우수사례자문그룹 (The Eco Best Practice Advisory 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 우수사례를 추천

(7) 인증 평가 과정⁵²⁾

- 호주생태관광협회, 주정부 관광기관, 보호지역 관리기관 등 각 기관에서 2명의 전문가 패널을 선정하고 한명의 독립된 의장을 선출하는데, 이 패널에서 최종 결정을 위한 인증지원서를 검토함
- 패널은 추가 협력 전문평가인을 둘 수 있는데, 이 전문평가인들이 일차적 서류검토를 하고, 점수를 책정하며, 참조인들에게 연락하여 관광 운영과 관련된 질문을 수행함
- 전문 평가인은 생태관광에 폭넓은 관여를 해왔고 근래에 생태관광산업에 종사했던 인물들로 선정함
- 전문 평가인들이 평가점수, 주관적 의견 서술, 참조인 검토 등을 패널에 제출함
- 전체 평가 과정은 신청서의 복잡성과 제공받는 배경 정보의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4일 이내에 끝내게 됨
- 신청서에 빠진 것이 있거나, 인증을 원하는 상품을 분명하게 정의하지 않았거나, 내부적으로 일괄성이 없으면, 평가자는 명확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고 처리 시간이 더 걸리게 됨
- Ecotourism Australia에서 현지 검증을 위해, 신청서 접수 후 1년에서 3년 이내에 현지 방문

(8) 인증 제도의 혜택⁵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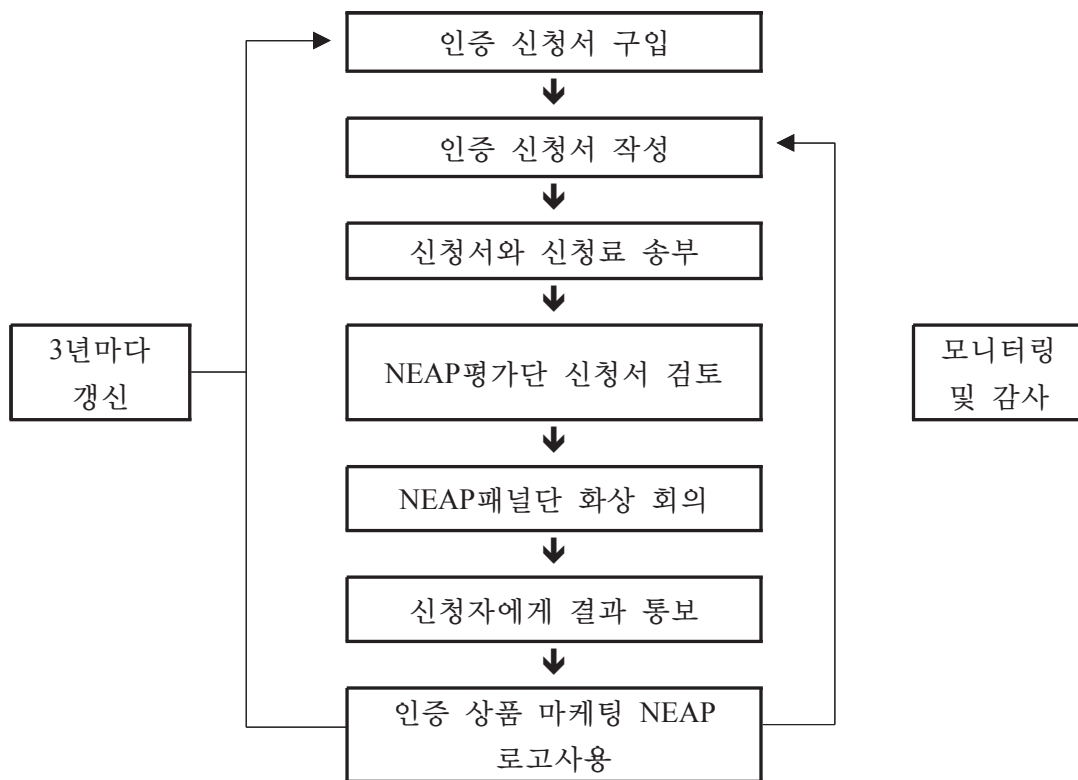
- 생태 친화적으로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데에 기준틀이 될 수 있음

52) Planeta.com, www.planeta.com/ecotravel/tour/certsummary_neap.html; www.ecotourism.org.au.

53) Ecotourism Association of Australia Ecotourism , www.ecotourism.org.au/eco_certification.asp

-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마케팅 도구로 이용 가능
- Green Travel Directory 브로셔에 인증된 프로그램 등재 가능
- Ecotourism Australia 홈페이지 “Green Holiday Idea of the Month”를 통해 홍보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국내외 트레이드 쇼, 행사, 미디어나 관련 연구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유용한 마케팅 툴이 됨
- 대보초해양공원청(The Great Barrier Reef Marins Park Authority)⁵⁴⁾이나 많은 주립공원 단체에서 혜택 받음

[그림 2] 자연·생태관광 인증 절차⁵⁵⁾



54) The Great Barrier Reef Marins Park Authority, <http://www.gbrmpa.gov.au/>.

55) 김성진(2003.4.9), 『생태관광 진흥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제3장, “국내외 관련 정책 및 사례 검토”, p.60.

(9) 인증 비용⁵⁶⁾

- 첫 등록 시 인증 책정 비용을 일괄 납입하여야 하며, 향후 매년 일정 유지비용을 지불하고, 지원서에 기입된 기준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선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표 10] 에코 인증 신청·유지 비용

(단위: 달러)

매출액	신청서 요금 (매 3년)	연회비
<250,000	345	410
250,001 - 1,000,000	395	605
1,000,001 - 5,000,000	495	845
5,000,001 - 10,000,000	595	1005
> 10,000,001	795	1115

(10) 인증프로그램의 운영⁵⁷⁾

- 호주생태관광협회(Ecotourism Australia: EA)에서 인증프로그램의 정책과 관리지원을 하기 위해 에코 인증 프로그램 관리위원회를 설립
- 관리위원회는 감사와 평가 패널을 관리하며, 의장은 EA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 맡음
- 인증 프로그램은 자체 기금으로 운영되며, 이익 프로그램이 아님
- EA 관리팀은 프로그램의 매일의 활동을 조정하며, 사업체들이 신청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과 모니터링 프로그램 제공

56) Id.

57) 이귀옥, 「생태관광정책에 관한 연구: 호주와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대구미래대학 논문집 제25집 (2007년) pp.351-372.

(11) 인증프로그램 관리⁵⁸⁾

- 참조인(한명은 보호지역 관리자 이어야만 한다)을 포함하여 강력한 평가과정
- 최상의 실현을 반영하기 위해 매 3년마다 기준을 검토하고 갱신
- 인증받은 사업자의 고객들로부터 피드백
- 사업자에 대한 감사: 인증기간동안 일정 단계에서 에코 인증 프로그램의 기준 전반에 걸쳐 현장 감사

2. 에코 가이드 프로그램(Eco Guide Program)

(1) 취 지⁵⁹⁾

- 권위있고 전문적인 생태관광 체험의 안내자로서의 가이드의 자격을 보장하는 신입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고안됨

(2) 설립 배경

- 2000년 주요 생태관광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추진된 시험적 프로그램에서 발전
- 이해 관계자들이란 관광산업, 보호지역 관리자, 훈련 제공자, 관광산업훈련 자문단, 자연생태 관광 인증 프로그램, 생태관광 협회, 가이드들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
- 에코가이드 호주 위원회는 에코가이드에 대한 관리와 평가를 감독하며, EA 관리팀의 전문가들이 후원하며, 그 구성은 EA 이사회로부터 선출되어 임명된 대표단으로 이루어짐

58) 이귀옥, 「생태관광정책에 관한 연구: 호주와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대구미래대학 논문집 제25집 (2007년) pp.351-372.

59) Ecotourism Association of Australia Ecotourism, www.ecotourism.org.au/open_pdf.asp

- EA는 비영리단체로 자체적인 기금정책으로 에코가이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3) 요구되는 자격

[표 11] 에코 가이드에게 요구되는 자격요건

일반적 가이드 자격요건	에코 가이드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산업에 대한 이해 • 가이드 및 에코 가이드로서의 역할과 책임 • 의사소통 능력 • 고객에 대한 서비스 • 안전 및 위기 대처 능력 • 집단 관리 능력 • 관광 개발 및 수행 능력 • 관광 상품에 대한 이해도 • 준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에 최소한의 피해를 주기 위한 방안 고민 • 지속적인 전문성 배양을 위한 준비 • 호주 토착민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과 적절하게 교류할 수 있는 능력

(4) 인증의 혜택

- 인증받은 가이드는 산업으로부터의 보증이라는 이익을 얻고, 한정된 경쟁적 우위를 제공하는 전국적으로 인증된 공식 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인식됨⁶⁰⁾
- 사업자는 자격있는 가이드와 교육을 위한 벤치마크의 예를 인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얻을 수 있고, 진정한 자연생태 관광 가이드의 이용을 채용하고 장려함으로써 상품에 대한 매력을 증대할 수 있음

60) EcoGuide Australia Program, <http://www.aquatica.com.au/downloads/EcoGuide%20Australia%20Program%20Invitation2.pdf>.

- 가이드와 사업자들은 가이드 서비스를 틈새시장에서 경쟁적 우위를 제공하는 진정한 자연관광이나 생태관광으로 촉진할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할 수 있음
- 방문자들은 안전하고, 문화적으로 민감하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질적 자연관광과 생태관광 체험을 제공하는 가이드에 대한 보증을 얻을 수 있게 됨
- 부정적인 환경·문화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가이드 방식으로부터 환경적 혜택을 얻을 수 있음
- 훈련 제공자는 최상의 자연생태관광 가이드 실행에 대한 벤치마크를 얻을 수 있음
- 보호지역 관리자들은 민감한 지역에서 허가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경우 적절한 훈련과 자격을 갖춘 직원을 식별하고 고용할 수 있음
- 에코가이드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에코가이드인증과 국립호주가이드(National Guides of Australia: GOA)인증을 동시에 얻을 수 있음

(5) 지원 절차

- 1년 이상의 가이드경험, 또는 3개월 이상의 가이드 경험과 함께 공인된 관광 가이드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 지원 제한
- 신청자는 워크북을 받고 자체 평가 질문서에 답을 하며, 평가자들이 도움을 줌
- 신청자는 자연 생태관광 가이드로서 필요한 태도와 행동 뿐만 아니라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를 수집하고 만들어야 함

-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가이드는 전문적인 윤리 강령에 서명함으로써 안전하고 문화적으로 민감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에서 질 높은 자연 혹은 생태관광 체험을 제공할 의도를 선언

(6) 현장 평가 작업

- 에코가이드 인증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현지 검증을 받아야 함
- 본인이 호주생태관광(Ecotourism Australia)에서 운영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개인적으로 평가인과 만나거나, 혹은 집단으로 평가인과 만나는 방법 중 택일

(7) 검증 비용

- 최초 등록 시 \$130 지불, 향후 매년 \$99 지불하여 갱신 가능

[그림 3] 호주 에코가이드 인증마크



3. 문화관광 인증제 (Respecting Our Culture Certification)

(1) 개요

- 2008년 일종의 관광 산업 발전 도구로서 호주원주민관광협회 (Aboriginal Tourism Australia)에서 개발되었고 호주생태관광협회 (Ecotourism Australia)에서 운영됨
- ATA에 의해 지역원주민, 산업 관계자들, 그리고 관광 사업자들과 긴밀하고 지속적인 조율을 통해 만들어짐

- 고객들의 기대에 전문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체험을 제공하고자 함. 또한 관광업이 호주 원주민의 문화적 유산을 존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고자 유도함

(2) 취 지

- 관광객에게 인증된 원주민 관련 관광 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줌
- 원주민 관광체험을 호주의 선도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자 함
- 원주민 관광체험을 세계적인 관광상품이 되도록 촉진함
- 사업자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민감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함
- 사업자가 경제적, 환경적, 위기 관리 운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토지 및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 관광인증협회(Tourism Accreditation Australia)에 의해 국가 관광 인증 프로그램으로 인증됨

(3) 프로그램의 중요성

- 원주민 문화 체험은 호주 관광 산업에 경쟁적 우위를 제공함
- 경쟁이 치열한 관광업계에서 국가적인 관광산업 표준은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음
- 인증을 취득한 사업자는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인증을 공식적으로 받게 됨



- 특히 이 프로그램은 문화적인 측면에 대한 인정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유일한 성격을 지님

(4) 프로그램의 혜택

- 문화적인 코드 (Cultural Protocols), 사업운영(Business Management), 국가에 대한 보존(Caring for Country - sustainable environmental practices)을 제공
- 지역적으로 문화의 통합성과 진정성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
- 국가 관광 인증 시스템 내에서 연계적으로 운영 됨
- 온라인 상이나, 녹색관광 가이드 (Green Travel Guide), 혹은 관광 행사 (Trade Show events) 등에서 마케팅 툴로 사용될 수 있음
- 문화체험을 강조하는 마케팅 툴로 사용될 수 있음
- 호주 내에서, 혹은 전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음

(5) 운영 방식

- 호주 국가 관광 인증 최상위 운영체에 의해 국가 공인 제도로 인정받고 있고, 따라서 인증된 사업자에게 국가관광 인증을 부여하고,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함
- EA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원격 상담을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함
- 프로그램은 사업 단위로 인증이 주어지고, 개인이나 상품으로 주어지지 않음
- 자기 평가를 통해 일차적으로 지원 가능하고, 독립된 평가인에 의해 검토됨.

- 인증이 되었을 시, 현장 평가 시스템에 의해 제출된 정보의 정확성과 신빙성이 검토됨
- 인증은 평생 유효하며, 매년 갱신, 업데이트 및 현장 평가를 만족시켜야만 함

(6) 선정 기준

- 호주 문화관광 인증에는, 환경적 지속성 외에도 특히 원주민문화의 반영과 지역주민과의 협력 등에 대한 요건이 제시됨

[표 12] 호주 문화관광 인증 기준

기 준	내 용
1. 사업 운영 및 계획	건전한 사업운영 및 계획은 경제적, 환경, 문화적 지속성을 달성하는 데 필수 요건임
2. 사업윤리	사업과 그 직원들이 윤리적인 사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함
3. 책임감 있는 마케팅	마케팅의 내용이 정확하고 현실적인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함
4. 고객 만족	지속적으로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함
5. 원주민문화강조	사업이 원주민 문화와 연계된 것이어야 함
6. 환경적 지속성	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이 될 수 있는 모범이 되어야 함
7. 지역주민과의 협력	지역사회에 건설적이고 지속적인 기여를 함
8. 문화 존중	사업이 특히 원주민 문화에 대해 민감하고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지님

[그림 4] 호주 문화관광인증마크



4. 기후 인증제 (Climate Action Certification)⁶¹⁾

(1) 개요

- 관광산업은 지구 온난화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산업형태나 환경, 지역사회에 영향을 최소화 하는 데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실정임
- ‘호주 기후 운동 협회(Climate Action Australia)’는 EA에 의해 중요한 전 지구적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됨
- CAA는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고 영향을 최소화 하는 데에 일조하는 실용적이고 적용가능한 툴을 제공하고자 함
- CAA의 기후인증제도(Climate Action Certification Program)는 2008년 Great Barrier Reef Marine Park Authority와 South Australian Tourism Commission과 공조 하에 개발된 프로그램임
- CACP는 관광 산업 모든 분야와 크고 작은 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구안됨
- 지원 가능한 조직은 일반 사업체, 관광 업체, 호텔, 리조트, 여행사, 정부 기관 및 산업 기관 등을 망라함

61) Sustainable Tourism Australia, www.sustainabletourismaustralia.com/cert.html.




(2) 목 표

- 기후 변화에 관한 개념 및 용어를 이해시킴
- 기후 변화를 늦출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함
-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디자인, 자재물 선택, 운영 방식 변화 등을 제안함
- 사업체와 정부 기관에서 찾을 수 있는 모범 사례 발굴
- 각 사업체, 산업 전반, 그리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제공함

(3) 인증 종류

- 호주의 기후인증제도에는 ‘기후변화경영인증(Climate Action Businesses),’ ‘기후변화혁신인증(Climate Action Innovators),’ ‘기후변화 리더인증(Climate Action Leader)’의 세 가지가 있음

[표 13] 호주의 기후인증의 종류와 내용

레 벨	로 고	내 용
Climate Action Businesses		배출량을 조절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하지는 않은 상태
Climate Action Innovators		배출량 조절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관리
Climate Action Leaders		사업 구성 및 운영 전 레벨에 있어서 기후 영향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관리. 배출량 조절을 위해 선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데 정진함.

(4) 운영 방식

- 기후인증제도는(the Climate Action Certification Program(CACP)) 호주생태관광협회의 소유로 설립된 호주지속가능관광협회에 의해 운영됨
- 프로그램 개발비용은 대보초해양공원청, 남호주관광위원회 등의 주요 관련기관들의 발전금에서 50%를, 나머지 50%는 호주생태관광협회의 교부금으로 충당함
- 기후인증제와 관련된 모든 비용과 수수료는 운영비용, 제도와 지속가능한 관광의 유지와 발전에 이용됨
- 기후 인증 제도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지만, 기존의 다른 기후 관련 인증 제도와 연계하여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러한 점을 인정하고 포인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과학 기술 발전에 발맞추어 인증 제도도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되며, 독립된 검증기관에 의한 인증제도 평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임
- 인증 프로그램 참여 사업체에게 포괄적인 정보와 관련 사이트 링크를 제공하여 도움을 주고 나아가 기후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시간을 절약해 주고자 함

(5) 비용

[표 14] 호주의 기후 인증 취득·유지 비용

(단위: 달러)

매출	평가비	연회비(갱신)
< 250,000	345	410
250,001 - 1,000,000	395	605
1,000,001 - 5,000,000	495	845

매 출	평가비	연회비(갱신)
5,000,001 - 10,000,000	595	1005
> 10,000,001	795	1115

(6) 평 가

- 지원서는 독립된 평가자에게 전달되어 검토되고, 지원자에게 정보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평가 기간은 14일 내외이며, 지원서가 복잡하거나 불완전한 경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 Sustainable Tourism Australia에서 지원서 인증 후 12개월 이내에 현장 평가가 이루어짐

5. 기타 관련 관광 인증

(1) TAAL 관광 인증

- 1990년 호주 국내·외에서 관광상품에 대한 품질보장 획득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였고, 그 결과 많은 호주의 관광회사들이 ISO 9000시리즈 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상당한 투자를 함
- 그러한 가운데 관광산업계는 인증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그러한 인증제가 정부에 의해서 운영되기 보다는 최소한의 허용될 수 있는 기준만을 기초로 하여 관광산업계에 의해 운영될 것을 주장함⁶²⁾
- 1997년 호주 최고의 관광업계단체인 호주관광위원회(Tourism Council Australia: TCA)가 브리스반에서 관련 당사자들이 회합한

62) Mr Jon Hutchison, "Tourism: Getting it right for the Millennium," Industry input to the development of a National Tourism Action Plan, (October 1997), p171.

가운데 다양한 인증방식을 국가적인 인증프로그램으로 통일하는 방식을 논의함⁶³⁾

- 이러한 논의 결과, 2000년 12월, TCA하에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독립회사인 호주관광인증협회(Australian Tourism Accreditation Association Ltd (ATAA)가 설립되었고 2004년 다시 관광인증호주(Tourism Accreditation Australia Ltd (TAAL)로 이름이 변경됨
- 이 인증프로그램은 호주관광인증기준(Australian Tourism Accreditation Standard)이라는 인증에 대한 범용적인 최소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이들 요건은 다음과 같음⁶⁴⁾
 - 법의 준수
 - 전략적 사업계획
 - 인적 자원의 관리
 - 환경경영
 - 행정과 운영
 - 소비자 서비스
 - 리스크 관리
 - 보수
- 생태관광인증신청자는 생태관광협회에 의해 동시에 TAAL인증신청을 하는 것으로 되고, 생태관광협회가 이에 대한 신청권한을 보유하는 것으로 상호 양해가 되어 있음⁶⁵⁾

63) Tourism Accreditation Australia Ltd., http://www.tourismaccreditation.org.au/index.php?sub=history&cat=about_us.

64) http://www.tourismaccreditation.org.au/index.php?cat=the_taal_system.

65) http://www.ecotourism.org.au/eco_certification.asp.

[그림 5] TAAL 인증마크



(2) TQUAL 관광 인증

- 2011년 5월, 호주 정부는 국가가 인증하는 고품질의 관광사업 (business)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인증마크(TQUAL)를 부여하는 국가 관광인증제(The National Tourism Accreditation Framework)⁶⁶⁾와 TQUAL마크를 출범⁶⁷⁾
- 이 제도의 목적은 호주를 방문하는 국내와 외국 관광객들로 하여금 인증에 부합하는 품질을 갖춘 적절한 관광사업을 선별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임
- 최초로 TQUAL 인증을 받은 사업은 호주 생태관광협회(Ecotourism Australia)와 AAA 관광(the Australian Automobile Associations)⁶⁸⁾였음
- 또한 TQUAL 보조금제도를 출범하고 혁신적인 관광프로젝트에 대한 금전지원을 실시하였고, 최초의 수여 프로그램은 Indigenous Land Corporation의 국립원주민훈련학교에서의 사업업무교육을 지원하는 Ayers Rock Resort 프로젝트임

66) The Australian Tourism Accreditation Program, <http://www.atap.net.au>.

67) Tourism Australia, <http://www.australia.com/TQUAL.aspx>

68) 1999에 설립된 전국단위 관광단체. <http://www.aatourism.com.au>.

[그림 6] TQUAL 인증마크



VI. 결 론

- 세계적으로 경제가 저성장의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관광산업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생태관광의 성장속도는 두드러짐
- 생태관광의 세계적 추세를 보면, 풍부한 자연이 보존된 저개발국가들이 생태관광의 공급자로서의 비중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데 반하여, 주 수요자층은 고등교육과 고소득의 선진국 국민들인 경우가 많음
- 이러한 생태관광의 주 수요자들의 경우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 또한 높은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수요자들의 관광상품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는 수준높은 기준을 충족하는 관광상품에 대한 공신력있는 정보가 필요함⁶⁹⁾
- 이러한 정보제공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생태관광인증제도이며 이는 생태관광을 일찍이 시작하여 발전시켜온 호주나 코스타리카 등의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시행하여 오고 있음

69) 실제로, 미국과 호주 관광객들의 3분의 2이상, 영국 관광객들의 90% 이상이 적극적인 환경보호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숙박업체의 책임으로 여기고 있음. Fact Sheet: Global Ecotourism, The International Ecotourism Society, <<http://mekongtourism.org/website/wp-content/uploads/downloads/2011/02/Fact-Sheet-Global-Ecotourism-IETS.pdf>>, p.2.

- 호주의 경우는 국가적으로 생태관광정책수립과 진흥을 위한 투자를 해오고 있으나 인증업무자체는 비영리법인인 생태관광협회에서 독자적으로 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규율도 찾기 어려움
- 생태관광과 관련된 호주의 법은 관광관련 법제와 환경보전관련 법제 그리고 유산과 관련된 법제가 있는데, 「환경보호와 생물다양성에 관한 법」상 ‘환경’의 범위에 유산을 포함하는 등 이들 법들이 상호 유기적이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
- 최근에는 정부조직개편으로 관광관련 국정은 「자원·에너지·관광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관광의 산업전략적 가치가 강조되면서 관광정책의 중요부분으로서 생태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음
- 호주의 경우, 생태관광과 관련하여, 호주생태관광협회의 주도로 ‘에코인증 프로그램,’ ‘에코 가이드 프로그램,’ ‘문화관광 인증제도,’ ‘기후 인증제’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이는 일반 관광인증 프로그램인 TAAL마크와 TQUAL마크와도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운영됨
- 우리나라 법제에 생태관광인증제를 도입할 경우, 특히 호주의 사례로부터 환경규제와의 유기적 관련성, 일반관광인증제와의 관계, 비영리법인인 생태관광협회의 독립성 유지와 신뢰성 확보의 측면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호주의 법제와 더불어 국가가 생태관광인증제를 직접운영하면서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는 코스타리카의 법제를 우리나라 제도 운영에 있어 또 하나의 참조사례로 연구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강미희(2010.2), 『생태관광 인증제도 추진방안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 김성진(2003.4.9), 『생태관광 진흥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2012.8), 『2011년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 이귀옥(2007.2), 「생태관광정책에 관한 연구: 호주와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대구미래대학 논문집 제25집, pp.351-372
- 정갑영(2011.1), 『저탄소 녹색관광을 통한 고용창출 방안: 수변관광사업을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
- 정옥식(2011), 「호주 생태관광체험기」, 『The Chungnam Review』, pp.44-55
- 최청일·김성일(2010.12), 『생태관광 통계조사』, 문화체육관광부.

국외문헌

- Alice Crabtree, Peter O'Reilly and Graeme Worboys, “Regulation of Ecotourism: Institutional Responsibilities and Frameworks: Sharing expertise in ecotourism certification: developing International Ecotourism Standard”
- Francoise Simon, “Regulating Ecotourism: Legal Frameworks and Market Guidelines, The Ecotourism Equation: Measuring the Impacts”, Yale F&Es Bulletin, pp.192-197



Lennon, JL (2006), Natural and Culture Heritage, theme commentary prepared for the 2006 Australian State of the Environment Committee,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and Heritage, Canberra, <<http://www.deh.gov.au/soe/2006/commentaries/heritage/index.html>>

Jon Hutchison, “Tourism: Getting it right for the Millennium”, Industry input to the development of a National Tourism Action Plan, (October 1997), p.171

온라인 자료

“Tourism Ministers’ Meeting Communiqué,” (4 May 2012), <http://www.ret.gov.au/tourism/Documents/Tourism%20Policies/tmc/Tourism-Ministers-Meeting-Communique-4May2012.pdf>.

“Guidelines for Investment in National Parks and Protected Areas” (January 29, 2012), TCR Tourism, <http://trctourism.com/news/guidelines-for-investment-in-national-parks-and-protected-areas>.

Kym Cheatham, “Travel Shouldn't Cost the Earth -- 21 years of Ecotourism in Australia.”

Fact Sheet: Global Ecotourism, The International Ecotourism Society, <<http://mekongtourism.org/website/wp-content/uploads/downloads/2011/02/Fact-Sheet-Global-Ecotourism-IETS.pdf>>

Commonwealth v Tasmania, http://en.wikipedia.org/wiki/Commonwealth_v_Tasmania.

Minister for Tourism (Australia), [http://en.wikipedia.org/wiki/Minister_for_Tourism_\(Australia\)](http://en.wikipedia.org/wiki/Minister_for_Tourism_(Australia))

관련 기관 홈페이지

Department of Resources, energy and tourism, www.ret.gov.au/tourism/Documents/tra/TourismContribution.pdf.

COAG Standing Council on Environment and Water, <http://www.scew.gov.au/about/index.html>.

Tourism Australia, <http://www.tourism.australia.com/en-au/>.

Tourism Accreditation Australia Ltd., <http://www.tourismaccreditation.org.au>.

Ecotourism Association of Australia Ecotourism, <http://www.ecotourism.org.au/>

The Great Barrier Reef Marins Park Authority, <http://www.gbrmpa.gov.au/>.

Sustainable Tourism Australia, www.sustainabletourismaustralia.com/cert.html

The Australian Tourism Accreditation Program, <http://www.atap.net.au/>.